##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

2020. 9. 0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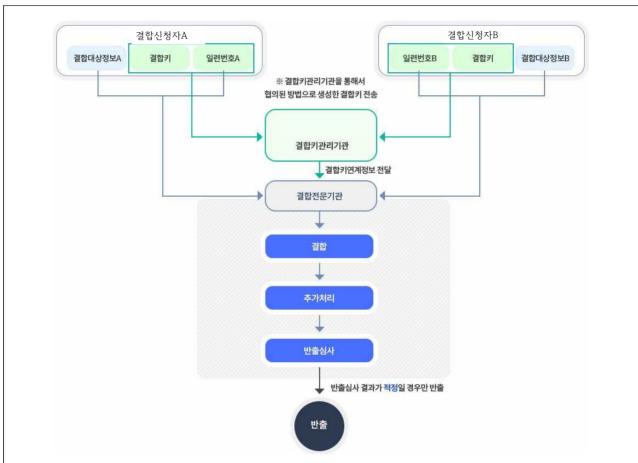
# 목차

I. 추진 배경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0
Ⅱ. 가명정보 개요	0
Ⅲ. 가명처리	0
1. 가명처리 절차	0
2. 가명처리 세부절차(	00
IV. 가명정보 결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3
1. 가명정보 결합·반출절차 ······ (	3
2. 가명정보 결합·반출 세부절차 ········!	5
∨.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	00
1. 가명정보 관리적 보호조치(	00
2. 가명정보 기술적 보호조치	00
3. 가명정보 물리적 보호조치	00
<참고 1> 개인정보 가명처리 기술 및 예시 ······· 0	0
〈참고 2〉 특이정보 정의 및 처리사례 0	0
〈참고 3〉 개인정보처리자 내부결합 절차 0	0
<참고 4> 가명정보 시계열 결합 절차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14
<참고 5> 결합신청서 작성 예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15

#### □ 가명처리 결합·반출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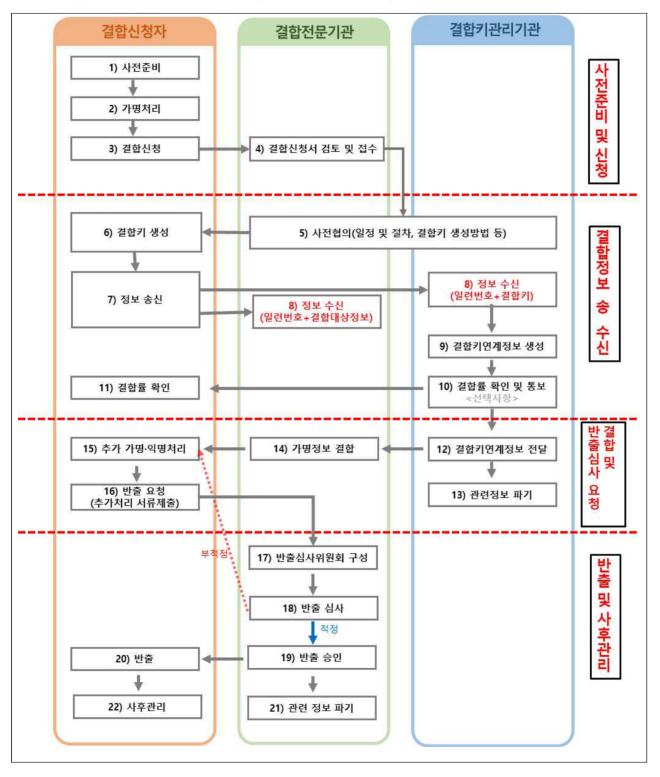
○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결합전문기관을 통하여 수행 하며,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 짐

#### <가명정보 결합·반출 절차>



- 1. 결합신청자는 각자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①일련번호 생성, ②결합키 생성, ③가명정보 생성을 수행한다.
- 2. 결합신청자는 결합신청이 접수된 후 1번 단계에서 생성한 결과물(①, ②, ③) 중 결합키관리기관에는 ①, ②번을 결합전문기관에는 ①, ③번을 송신한다.
- 3.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신청자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이용하여 '결합키연계정보'를 생성하여 결합전 문기관에 해당 정보를 전달
- 4.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연계정보를 이용하여 결합신청자로부터 수신한 가명정보를 결합
- 5.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 내에서 결합된 정보에 대한 추가 가명처리를 하고 전문기관에 반출심사 요청
- 6. 결합전문기관은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출여부를 심사하고 '적정'인 경우 반출 승인

○ 가명정보 결합 시 결합 수행에 대한 수행 주체(결합신청자, 결합키관리 기관, 결합전문기관)별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으며,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결합신청자 기준으로 세부절차를 안내함



※ 결합신청자는 가명정보 결합 절차를 진행하면서 세부 단계별로 생성되는 정보에 대한 무결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

#### ② 가명정보 결합·반출 세부절차

○ 결합신청자는 ①사전준비 및 결합신청, ②결합키 생성 및 정보 송신, ③추가처리 및 반출 요청, ④ 반출 및 사후관리의 총 4단계를 거쳐 가명정보 결합·반출을 수행할 수 있음

#### <결합신청자 결합·반출 신청 절차>



(1단계) 결합신청자는 사전에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합신청에 필요한 가명처리를 수행하거나 결합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사전 준비를 수행하고, 결합전문기관에 결합 신청

(2단계)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과 결합 일정, 전송 방법 등을 협의하고,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 결합키 생성에 이용되는 정보를 수신하여 결합키를 생성한 후 결합 관련 정보 송신\*

- \* 결합전문기관(일련번호+결합대상정보), 결합키관리기관(일련번호+결합키)
- ※ 이때, 결합신청자는 결합키관리기관에게 사전결합률을 요청할 수 있음

(3단계) 결합신청자는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위해 결합전문기관 내에 설치된 별도의 공간\*에서 추가 가명처리 할 수 있으며, 결합전문기관에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반출심사를 위한 기초자료\*\*를 제출하여야 함

- \*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목적으로 추가 가명·익명처리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
- \*\* 추가 가명처리 시 적용한 가명·익명처리 기법, 수준 등에 관한 사항 등

(4단계) 결합신청자는 반출된 가명정보를 당초 결합을 신청한 목적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,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함

### 4-① 사전준비 및 결합신청

#### ① 사전준비

- 결합신청자들은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 간의 협의<sup>\*</sup>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사전준비를 수행하여야 함
  - \* 협의사항: 결합목적에 부합하는 가명정보 선정, 시계열 결합 여부, 결합률 확인 여부, 결합키 생성항목,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가명처리 수준 등
- 결합신청자들은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서 결합키를 생성할 때 활용할 항목을 결정하여야 함
  - o 결합키 생성 항목 정의(예시)
  - A사 : 성명, 휴대전화번호, 생년월일, 주소, 차량 정보, 보유수, 주유금액 등
  - B사 : 성명, 휴대전화번호, 생년월일, 주소, 주거형태, 보증금 유무, 월세 여부 등
  - ⇒ A, B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성명, 휴대전화번호, 생년월일을 결합키 항목으로 선정
- 결합신청자는 필요시 가명정보 결합에 관한 별도의 내부승인절차 등을 이행할 수 있음

#### 2 가명처리

○ 결합신청자는 가명처리 대상 정보에 정보주체별로 **중복되지 않는** 일려의 값(일러번호)을 생성하여야 함

[일련번호 생성방법(예시)]

		ſ	신청기관A		신청기관B					
		성명	휴대전화번호	생년 월일		일련 번호	성명	휴대전화번호	생년 월일	
	A1	강감찬	090-4562-7895	1947	•••	B1	유관순	090-4567-9876	1982	
	A2	권율	090-7854-5689	1975		B2	권율	090-7854-5689	1975	
	A3	유관순	090-4567-9876	1982		В3	강감찬	090-4562-7895	1947	
[	•••	•••	•••				•••	•••		

- 결합신청자는 **결합기 생성을 위한 항목\*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**들에 대해 가명처리를 수행하여야 함
  - \* 결합키는 결합신청 후 '결합키관리기관'과 협의하여 생성해야하므로 결합키생성을 위해 사용되는 항목은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
    - o 결합신청자가 보유한 개인정보파일 (예시)
    - A사 : (성명, 휴대전화번호, 생년월일), 주소, 차량 정보, 보유수, 주유금액 등
    - B사: (성명, 휴대전화번호, 생년월일), 주소, 주거형태, 보증금 유무, 월세 여부 등
    - o 결합신청서 작성 전 처리되어야 할 가명처리 대상 항목
    - A사는 **주소, 차량 정보, 보유수, 주유금액 등**이, B사는 **주소, 주거형태, 보증금** 유무, 월세 여부 등이 가명처리 대상
    - \* 가명처리 대상 중 분석목적에 필요하며, 개인식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항목인 경우 처리대상에서 제외 가능
    - ※ 성명, 휴대전화번호, 생년월일은 결합키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므로, [1단계. 사전준비]단계에서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않음
  - 가명처리 시 [Ⅲ-② 가명처리](p.00)의 내부 활용·제공<sup>\*</sup>에 관한 사항을 참조할 수 있음
    - \* 결합된 가명정보를 반출하는 자(예시:총 3개의 결합신청자 중 반출하여 활용하는 자는 1인일수도 있음)의 처리 목적 및 처리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명처리 할 수 있음
- 결합신청자는 가명처리 수행에 대한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보관 하여야 함

#### ③ 결합신청

- (신청서 작성) 결합신청자는 [별지제3호서식]결합신청서<sup>\*</sup>를 각자 작성 하고,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할 첨부서류를 함께 준비하여야 함
  - \* 결합신청서 작성 방법은 '<참고5>결합신청서 작성 예시' 참조

#### ○ 결합신청

- 결합신청자는 소관분야의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'가명정보 결합 종합 지원 시스템'을 통해 결합신청 수행
- 결합전문기관 선정 시 결합에 사용될 가명정보의 속성, 결합 목적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, 소관분야의 전문기관이 없는 경우 다른 분야의 결합전문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을 할 수 있음
  - \* 결합에 소요되는 시간은 데이터의 크기와 결합전문기관에 신청되어 있는 다른 결합작업의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#### ○ 신청서류 보완

- 결합전문기관이 결합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 부족한 서류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
-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의 가명처리 수준에 대하여 권고하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

### 4-② 결합키 생성 및 정보전달

#### □ 결합키 생성

- 결합신청자는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결합키를 생성하여야 하며, 결합키 생성에 필요한 사항<sup>\*</sup> 및 결합에 관련된 사항<sup>\*\*</sup>을 결합키관리 기관 및 결합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함
  - \* (결합키관리기관)결합키 생성에 이용되는 salt값 및 생성에 관한 기술지원, 사전 결합률 확인여부 등
  - \*\* (결합전문기관)결합일정 및 절차, 전송 파일 형태 등 결합에 필요한 사항
  - (결합키 생성) 결합키는 사전준비 단계에서 결합신청자간 합의한 항목과 결합키전문기관과 협의한 사항(salt값 등)을 적용하여 생성

#### [결합키 생성방법(예시)]

'홍길동' + '01012345678' + '생년월일' + 'abc123' (성명/전화번호/생년월일/Salt값) 결합키 생성 알고리즘(SHA256 등) 'a9fe0r · · · sr13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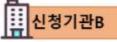
- 결합을 위한 식별정보의 가명처리에 사용하는 기법은 일반적으로 일방향 암호화를 사용
- o 일방향 암호화를 사용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가 가명정보의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2020년 기준으로 일방향 암호화 기법 중 SHA2-512에 Salt를 포함하여 사용하 거나 HMAC-SHA2알고리즘을 이용할 것을 권고함
- o Salt의 길이는 Hash처리 결과 값의 크기와 동일한 크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함

\* 출처 : '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', KISA

[성명, 휴대전화번호,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결합키를 생성하는 예시]

# 신청기관A

일련 번호		성명	휴대전화번호	생년 월일
A1	9A0 A5DDF	<del>강감친</del>	090-4562-7895	<del>1947</del>
A2	C2E 7067C	권을	090 7854 5689	<del>1975</del>
A3	DAC 387EA	유관순	090-4567-9876	<del>1982</del>



일련 번호	결합키	성명	휴대전화번호	생년 월일
B1	DAC 387EA	유관순	090-4567-9876	<del>1982</del>
B2	C2E 7067C	<del>건을</del>	090-7854-5689	<del>1975</del>
В3	9A0 A5DDF	강감찬	090-4562-7895	<del>1947</del>

#### [참고]

- o 결합키 생성 전에 암호화대상 정보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
- o 동일한 결합키가 생성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자 동일한 데이터에 동일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호화 처리 후 결과 값을 확인하여야 함
- \* 한글의 경우 EUC-KR로 인코딩 된 데이터와 UTF-8로 인코딩 된 데이터를 동일한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는 경우 서로 다른 결과 값이 생성될 수 있음

#### [2] **정보전달**

- 결합신청자는 결합키관리기관과 결합전문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
- '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 시스템'을 통해 결합키관리기관에 "결합키+ 일런번호" 전송
- 결합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전송방법을 활용하여 결합전문기관에 "결합대상정보+일련번호" 전송
  - \* 대용량의 데이터는 가급적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며, 결합 전문기관별 전송방법이 다를 수 있음



- 결합신청자는 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압축하여 암호화한 뒤 결합키 관리기관 및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함
  - \*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송·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, 압축 및 암호화, 무결성 검증 등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함
    - ※ 데이터 전송 시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하는 방법(예시)
      - ① 결합키관리기관, 결합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가명정보 전송 시 전송대상 파일에 대한 해시값을 생성하여 함께 보내 전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무결성 검증
      - ② 데이터 전송 전 전체 데이터를 확인하여 파일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한 후 전달 \* 전체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경우 앞부분의 10줄과 가장 마지막의 10줄을 확인하여 오류가 없을 때 전송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

#### ③ 결합률 확인

- 결합신청자가 결합키관리기관과의 협의 단계에서 사전결합률 확인을 요청한 경우,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키연계정보 생성과정에서 결합률을 확인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보
- 결합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결합키를 재생성 할 수 있음
- 결합키에 문제(결합률 0% 등)가 있다고 판단하거나, 효율성이 높은 결합결과물 생성을 위해 결합키 생성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 등
- 단순히 결합키 생성 항목만 변경하는 경우 결합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, 결합신청 내용의 변경(결합 목적, 항목수, 레코드 수 등)이 있는 경우 결합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
- 결합키 생성 항목에서 제외된 항목을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포함 하는 경우, 해당 항목에 대한 가명처리를 수행하여야 함

### 4-③ 추가처리 및 반출심사 요청

#### □ 추가처리

- 결합신청자는 결합된 정보를 결합전문기관의 내에 설치된 별도의 공간에서 반출을 위한 추가 가명처리<sup>\*</sup>를 하여야 하며, 결합전문 기관에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
  - \* 결합된 정보가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도록 추가 가명·익명처리 수행
  - 이때, 추가 가명처리를 할 수 있는 자는 결합신청자 중에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자로 제한됨
- 반출심사는 결합된 정보를 반출할 자의 처리 목적과 처리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, 추가처리 시 가명처리 수준은 결합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처리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
- 익명정보로도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, 익명처리\*하여 반출하여야 함 \* 시간·비용·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

#### ② 결합정보 반출심사 요청

- 결합신청자는 반출을 위한 추가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결합전문기관에 반출을 요청할 수 있음
- 반출심사는 결합신청자별로 이루어지므로 추가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결합전문기관에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
- 반출 요청 시 추가 가명·익명 처리에 관한 내역\*을 제출하여야 함 \* 추가 가명처리 시 적용한 가명·익명처리 기법, 수준 등에 관한 사항 등
- 결합전문기관이 반출요청을 받은 경우,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출심사를 진행함
- 결합신청자가 반출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반출심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련된 내용을 반출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\*하여야 함
  - \* 결합된 정보의 활용 목적에 따른 가명처리 적용 기준 등

- 결합신청자가 결합에 사용된 가명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, 해당 정보와의 결합가능성 등이 반출승인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음
- 반출심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,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 내에 설치된 별도의 공간에서 추가 가명·익명처리를 하여야 함
  - 이 경우에도 반출승인을 위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자문 등 필요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음

### 4-④ 반출 및 사후관리

#### 반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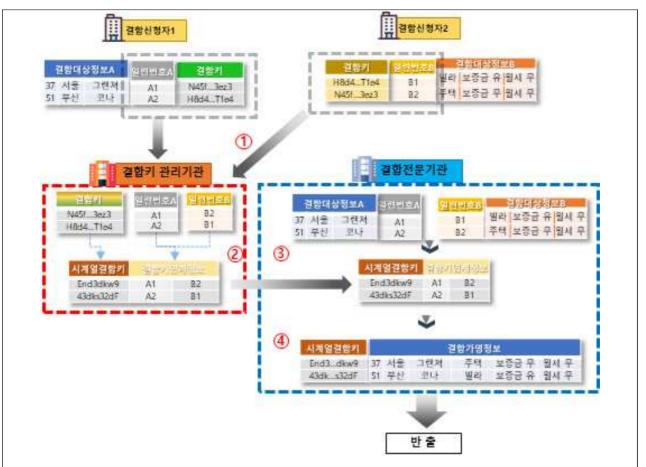
-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반출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합 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과 반출방법을 협의하여 승인된 정보를 반출할 수 있음
-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에 결합 및 반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

#### 2 사후관리

- 결합신청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결합데이터의 재식별 또는 재결합 시도 및 결합 목적 외의 활용을 해서는 안 됨
  - 단, 시계열결합을 신청하여 시계열결합키를 포함한 정보를 반출한 경우, 이전에 반출한 시계열 반출정보와 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음
    - \* 시계열정보 간 결합을 수행할 때마다 재식별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, 필요시 시계열 정보 전체에 대하여 추가 가명처리 수행
- 결합신청자는 반출한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V.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따른 보호조치를 준수하여야 함

#### 참고 4

#### 가명정보 시계열 결합 절차



- ① 각 결합신청자는 결합대상정보의 정보주체에 대한 일련번호를 생성하고, 결합키관리기관과 합의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결합키를 생성
- 생성한 결합키와 일련번호는 결합키전문기관으로 송신
- ② 결합키관리기관은 각 결합신청자로부터 수신받은 결합키를 활용하여 1)시계열 결합키와 2)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
  - ※ 일반적인 결합의 경우 시계열 결합키를 생성하지 않음
- ③ 결합키관리기관에서 생성한 1), 2)의 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송신하고, 결합전문 기관은 수신받은 2)를 활용하여 각 결합신청자의 가명정보를 결합
- ④ 결합전문기관은 결합된 가명정보에 1)을 포함하여 반출하고, 결합신청자는 반출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이행

※ 최종 시계열 결합 시 종료에 대한 안내를 결합키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하며, 결합키관리기관은 해당 결합 후 보관하고 있는 시계열결합키 생성방법을 삭제

## 참고 5 결합신청서 작성 예시

신청서구분	작성 방법
신청번호	O 동일한 가명정보 결합을 식별*하기 위해 각 결합신청자간 합의한 임의의 신청번호**를 동일하게 작성 * 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은 결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** (예시)대표신청자+신청일자+일련번호+전체신청자 수 ⇒ AAA-20200805-001-3
결합 신청자	o 결합신청자의 일반사항을 작성 - 기관명,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, 주소, 대표자명, 담당자, 연락처, 신청자 구분
가명정보 제공	○ 결합대상 가명정보의 정보를 작성  - 파일명, 제공방법, 제출예정일, 전체 가명정보 제공 기관명(총수), 제공정보 요약(전체 항목 수, 전체 레코드 수, 전체 파일 크기)  ※ 가명정보를 결합 시 제공하지 않지만 결합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 [해당없음] 표시
결합 결과물 이용	○ 결합 결과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작성  - (시계열분석) 시계열분석의 경우 해당사항 작성  ※ 추가 시계열 분석의 경우, 신규 시계열 분석 시 발급된 결합접수번호를 함께 기재  - (결합목적) 결합 가명정보 처리 목적에 해당사항 작성  - (세부결합목적) 결합 가명정보를 활용하려는 세부내용에 대한 요약  ※ 가명정보 결합에 제공하지만 결합 결과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[해당없음] 표시
첨부 서류	<ul> <li>O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 등본 등</li> <li>O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(전체 항목명, 가명처리 대상 항목명 및 포함내용, 가명처리 기법 및 예시* 등)</li> <li>* [III-②] 가명처리 절차內 '가명처리 수준표' 참조(p.00)</li> <li>O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연구계획서, 제안서 등)</li> <li>O 안전조치계획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</li> </ul>

### 〈예시〉 개인정보처리자 ㅁㅁㅁ(개인), A사와 B사가 신청하는 경우

#### □ 개인정보처리자 ㅁㅁㅁ(개인)의 신청서(예시)

### 결합 신청서

$\Delta I M H \Delta$	A-202009
	00-001-3

결합신청자									
기관명	해당입	겂음			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		1900-00-00 * 생년월일 기재		
주소	ㅇㅇ시	이시 ㅇㅇ구 ㅇㅇㅇ			대표자명		해당없음	해당없음	
담당자		1 0 0			담당자 연락처 (전화, e-mail)		010-0000-0000 abc@oooo.oo.oo		
신청자 구분	[🗸] 개	인 [] <del>공</del>	공기관	[ ] 비영리법	법인 [ ] 민간기	기관			
			フ	· 명정보 제공				해당없음	[ ]
파일	일명				2019년도_종합				
제공병	방법			[✔] 온라인	]	] 오	프라인		
제출여	l정일			2020 է	면 9월 (	)0 일			
전기	체			총 2개ㆍㅁㅁㄷ	ı(2019년도_종합),	АДНІ	파 <b>익명1</b> )		
가명정되	보 제공	* :	결하시		·(2019년 <u>-</u> 20급// 의 가명정보를 제			요마 하	
기관명	(총수)			이 에 에는 글도				01 0	
제공정보 컬럼			·						
요(	약	전체 레코드							
				합 결과물 이용				해당없음	[ <u>/</u> ]
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	계열 분	선 [ ]	해당없		 닌규) [ ]시계열	!(추가.	결한전수! -		)
	"느 느 결합목적		통계작				보고 기록보존 기록보존		
	부결합목								
							2020 년	9 월	00 일
					신청인			□ (서명 되	드는 인)
<b>결합전문기관의 장</b> 귀하									
첨부 서류									

### □ A사의 신청서(예시)

## 결합 신청서

신청번호	A-202009
	00-001-3

결합신청자									
기관명	A사				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	호	000-00-00000		
주소	ㅇㅇ시	ㅇㅇ시 ㅇㅇ구 ㅇㅇㅇ			대표자명		000		
담당자	0 0	0			담당자 연락처 (전화, e-mail)		010-0000 def@ood		
신청자 구분	[]개	인 [🗸]	] 공공기관 [	] 비영리법		' 관			
			가명정	정보 제공				해당없음	음 []
 파일	 일명				파일1				
제공병			[[	<u>✓</u> ] 온라인		] 오	 프라인		
제출여	∥정일			2020 h	- <u> </u>	 0 일			
	체			2711	·/2010はに ふさい	A 11/11	dolma)		
가명정보	보 제공				1(2019년도_종합),			10 m ±1	
기관명	(총수)		※ 걸압신성사 	B사는 별도	의 가명정보를 제 <sub>7</sub>	상아시	 	[용만 암	
제공	정보		범 수 		307#				
요9			코드 수						
	•	선세 끄	h일 크기		00	mb			
	71104 14			화물 이용		/ <del>+</del> -1	74-17-1 A	해당없음	
	계열 분선		[ <b>'</b> ] 해당없음 [		<u> </u>				)
	결합목적		[✓] 통계작성	[ ] 파악	적 연구 []	공익스	기록보존	<del>-</del> <del>-</del> <del>-</del> -	
세-	부결합목	적			(구체적 목적 설	설명)			
「개인	정보보.	호법」 제	28조의3제1형	항 및 같은	법 시행령 제	29조.	의3제1힝	에 따른	결합
을 위	하여 결	합전문기	기관에 결합신	청서를 위	와 같이 제출합L	- 다.			
							2020 년	9 월	00 일
					신청인		0 0	 o (서명	
<b>결합전문기관의 장</b> 귀하									
	1 11017		<b>40</b> 53454		JT				
	•				J자 관련 서류 1부 로며 가며처리 대신		고며 가며 <sup>.</sup>	처리 기버	
첨부	2.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(전체 항목명 가명처리 대상 항목명, 가명처리 기법 및 예시 등) 1부(해당 경우에 한함)								
_ · 서류	-,	– –	세 년급/   사용된 속성 /	제외					
			명할 수 있는 /						
	4. 안전3	안전조치계획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							

### □ B사의 신청서(예시)

## 결합 신청서

신청번호	A-202009
	00-001-3

결합신청자									
기관명	B사				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000		000-00-0	000-00-00000	
주소	ㅇㅇ시 ㅇㅇ구 ㅇㅇㅇ			대표자명		$\triangle$ $\triangle$ $\triangle$			
담당자	$\Diamond \Diamond$	$\Diamond$			담당자 연락처 (전화, e-mail)		010-0000 hij@oood		
신청자 구분	[]개	인 [	] 공공기관	[ ] 비영리팀					
			7	가명정보 제공				해당없음	[•]
파일	 일명								
제공병	방법			[ ] 온라인		[ ] 오	프라인		
제출여	∥정일				년 월 일				
전:	체								
가명정보	보 제공								
기관명	(총수)			T					
제공	정보		l럼 수 메리디 스						
요(	약		레코드 수 파일 크기						
		L - 11		합 결과물 이용				해당없음	Г 1
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	계열 분·	선	[ <b>/</b> ] 해당없		 닌규) [ ]시계일	g(추가,		-	)
	" ㅡ ㅡ 결합목적	•	[ ] 통계직				보고 기록보존 기록보존		
세브	부결합목	적			(구체적 목적	설명)			
 Г <b>л</b> и ОІ	저ㅂㅂ	ㅎ 버	데28조이37	데1하 미 가으	 - 법 시행령 제	1120天	이3제1하	에 따르 :	 겨하
					· ᆸ 시형당 ^ 와 같이 제출합		-12/11-9	에 너 <del>는</del> '	르 딥
2 1	जल =	임당인	기단에 글	합인증시를 제	되 붙이 제출합	니니.	2020 년	9 월	00 일
					 신청인				
신청인 스 스 스 (서명 또는 인)									
<b>결합전문기관의 장</b> 귀하									
	4 11017	·			I-I -I -I -I				
	1.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 1부								
첨부	2.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(전체 항목명 가명처리 대상 항목명, 가명처리 기법 및 예시 첨부 등) 1부(해당 경우에 한함)								
 서류	-,	–	3 두에 현급/ 게 사용된 속	·성 제외					
				는 서류 1부					
	4. 안전조치계획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								